

# 안산시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112
----------	------

제출년월일 : 2011. 4. 15.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 제정이유

-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한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대형유통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유통산업 상생발전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제6조)
- 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운영·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제9조)
- 다. 전통산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 라.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등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 마. 전통상업지구의 보전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 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제7조(지방자치단체의 사업시행 등), 제8조(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변경 등록), 제13조의3(전통산업보존구역의 지정)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대규모점포의 종류)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등), 제6조의3(준대규모점포의 영업신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예산 수반사항 : 해당없음

사전예고(결과) : 별첨(의견있음)

○ 입법예고 : 2011. 1. 17. ~ 2011. 2. 6.(20일간)

기타 참고사항 : 별첨

○ 표준 조례(안)

# 안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3항 및 제13조의3 제2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산시 유통산업을 지원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4. “대규모점포등”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말한다
5. “대형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별표 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및 쇼핑센터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6.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5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7.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기업간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8.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대형유통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제4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시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건전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의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 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에 의해 경기도지사가 수립한 경기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안산시 유통산업상생발전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통산업 상생협력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유통산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비자 편익의 증진
3. 유통산업 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과 지역경쟁력 제고
4. 대규모점포와 중소규모점포 간의 상생발전
5.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보존
6.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유지 방안
7.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8. 대규모점포 등의 신규 개설 예측과 유통산업의 변화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안산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유통산업의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유통산업발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현황,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2. 업태별 유통기능 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관한 사항
3.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
4. 대규모 점포 등의 신규 개설 예측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시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안산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구성하되, 존속기한은 2015년 12월 31까지로 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구성한다.

1. 개설 또는 개설하고자 하는 대형유통기업 점포의 대표

2.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기업 대표
  3. 소비자단체 및 시민단체 대표
  4. 안산상공회의소 관계자
  5. 안산소상공인지원센터 관계자
  6. 안산시 공무원 중 유통업무 담당과장
  7.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8. 그 밖에 시에 거주하는 자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업무 담당으로 한다.
  -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 기간으로 한다.
  - ⑦ 협의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회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한다.
  - ⑧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⑨ 협의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협의회의 업무)**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다.

1. 대형유통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발전 선언의 채택 및 상호 우호증진을 위한 행사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3. 대형유통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상품진열, 위생관리, 마케팅, 물류효율화 및 정보화 등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지원에 관한 사항
4. 안산시 관내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5. 대형유통업·중소유통업 균형발전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상생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 또는 포상추천, 대정부 건의 등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사항
7.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8. 제14조제4항에 관하여 시장이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9. 그 밖에 대형유통업·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촉진 및 지역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시장은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고하여 시민의 의견을 들은 후 제8조에 따른 협의회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시 고려사항) 시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전통적 가치
2.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유통산업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시민·소비자에게 미치는 파급효과

**제13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취소 등) 시장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제11조 제2항 및 제3항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제14조**(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 등) 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등을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점포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개설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
  2.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와 상생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 등을 제시하는 상생협력 사업계획서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제6조의 추진계획에 적합한 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유를 분명하게 기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을 때에는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 ⑤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4항에 따른 협의회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2. 전통시장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15조(조건등의 부과)** ①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할 때에 시 전통시장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협의회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 “조건등” 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등을 붙이는 경우 대규모점포등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최소한으로 제한되도록 하여야 하고, 시민·소비자의 후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제16조(전통상업지구의 보전 활동 및 지원)** 시장은 전통시장 및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보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지원과 경영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9조제7호·제8호 및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은 「유통산업발

전법」 제8조제1항(준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부분), 제2항, 제3항 및 제13조의3의 규정이 효력을 가지는 기간까지 효력을 가진다.

소관 실·과		경제정책과
입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경제정책과장 이 성 운
	담당·팀장 직위·성명	지역경제담당 허 진
	담당자 성명·전화	이 경 남 (행정 2272)

# 안산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2112
----------	------

제안년월일 : 2011. 4. 28.  
제안자 : 경제사회위원장

## 1. 수정이유

-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등록 요건을 보다 강화하여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함.

## 2. 주요 골자

- 건축허가 또는 점포 개설공사 60일전에 시장에게 개설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중소유통업체들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안 제14조).
-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심의를 위하여 등록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함(안 제17조).

# 안산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안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전통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제8조제2항 중 “10명”을 “15명”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이하의”를 “이내의”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개설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허가 또는 점포 개설공사 60일전에 시장에게 개설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검토하여야 한다”를 “검토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해당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중소기업체들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7조는 제18조로 하고,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심의) ① 시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심의위원회에서는 대규모점포 등이 제11조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녹지지역, 근린공원 내에 들어서는 체육근린시설에 개설등록 신청을 할 경우에 제14조제1항의 구비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개설하고자 하는 점포의 건축허가의 유무,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여부, 대자건축의 소유권사용권의 사실여부
2. 개설하고자 하는 주변 지역의 상권에 미치는 영향평가
- ③ 심의위원회는 지역여건, 주거환경 적합성, 주변시설 및 구조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상권영향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등록수리를 제한하거나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 ④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시 업무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시의회 의원
  2. 소비자단체 및 시민단체 대표
  3. 중소기업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유통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⑥ 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 ⑧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